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26.(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3.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74호)
나. 회부일자 : 2026. 3. 10.
다. 상정일자 :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정비하고,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북구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안 제13조)
-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별표 5)
 -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10일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5일)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1. 29. ~ 2026. 02. 1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성북구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일·생활 균형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안 제13조)

- 구청장이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와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 운영 과정에서 직원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를 명문화함.
- 현재 서울시¹⁾를 포함하여 용산구·성동구·광진구 등 다수 자치구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규정 신설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 확대(안 제18조제1항, 별표 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일수표 >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3) 그 밖의 조문 정비

- 조문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및 별표 인용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한 사항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령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는 저출산 대응 및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함.
- 또한 사생활 보장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25.(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3.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75호)
- 나. 회부일자 : 2026. 3. 10.
- 다. 상정일자 :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포상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연차와 관계없이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포상 심사기준 조문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 포상 심사기준의 근속연수 제한 조항 삭제(안 제18조제3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1. 29. ~ 2026. 02. 1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공무원 포상 제도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근속연수 중심의 형식적인 포상 제한을 완화하고, 공적의 실질적인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심사기준 문구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 포상 심사기준 중 “공적”을 “유공 공무원의 공적”으로 구체화하여 심사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

(2) 연차·근무기간 제한 삭제(안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삭제)

- 현행 조례상 서울시 근무기간 3년 이상 및 성북구 근무기간 1년 이상 등 일정 근속연수 및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기간 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음.
- 이에 해당 요건을 삭제하여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③ ----- ----- ----- ----- ----- -----
1.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근속 3년 미만, 성북구 근속 1년 미만인 사람	<삭 제>
6. 현부서 근무 6개월 미경과자	<삭 제>

(3) 포상 제외 사유 문구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제3항제8호 신설)

- 포상 제한 규정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포상 운영 시 표창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함.

<안 제8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7. 그 밖에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u>공,사생활</u> ----- ----- ----- -----
<신 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공무원 포상 제도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근속연수 중심의 형식적인 기준을 완화하고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포상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포상대상자 제외 기준이 되는 근속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서울시 및 타 자치구가 조례상 별도의 근속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정책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규정은 적용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표창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